

과주시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□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항은 삭제하고, 법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관련조항을 개정하며 현실적으로 적용이 곤란한 사문화된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법률과 부합되도록 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현재 관내 전지역에 대하여 분뇨를 수집하고 있어, 제외지역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 (안제2조3호)
- 법령에 운영관리기준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사문화된 조항인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관리기준 삭제 (안제7조, 제12조, 제15조)
- 생활보호대상자, 천재지변등으로 재력을 상실한자등 청소수수료 감면대상자의 정화조 청소 또는 분뇨를 대행업소에서 수거시 그 실비를 시장이 지급할 수 있는 조항 신설. (안제8조)
-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분뇨관련 영업허가 제한규정 삭제 (안제24조)
- 개정된 법률에 부합되는 부과대상 항목의 적용 및 방류수 수질관리 강화를 위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부분에 있어서는 상향조정을 기타 항목에 대하여는 부분적 상·하향 조정 (안제16조의 별표4)

□ 검토의견

-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항은 삭제하고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며 현실적으로 적용이 곤란한 사문화된 조항은 폐지하여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임.
-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- 현실적으로 운영에 필요없는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정리하고
 -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자치입법에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
 - 안 제8조 6항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천재지변등으로 재력을 상실한 자등 청소수수료 감면대상자의 정화조 청소 또는 분뇨를 대행업소에서 수거시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
 - 안제16조의 별표4의 과태료 부과기준 법제58조의 개정에 따라 법률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본 조항의 시행은 개정공포된 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었음.
-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개정조례안이라고 사료됨.